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9527
----------	------

제안연월일 : 2014. 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11월 21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20일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4.2.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2.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국가

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2조의2제1항)
- 나. 국가는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2조의2제2항)
- 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국가는”을 “국가는 국내외적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피해자에 관한”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으로, “공동조사”를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③ (생략) <신설></p>	<p>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 명예 회복,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 ----- ----- -----.</p> <p>제3조(결정 및 등록) ① ----- ----- ----- ----- ----- .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호</p>

<p>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3. (생략)4. 일본군위안부 <u>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u>5. (생략)② (생략)	<p><u>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1조(기념사업 등)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3. (현행과 같음)4. -----<u>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u> ----- <u>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u>5.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
--	--